

납품대금 지급업무 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본인 _____ 인
주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갑"이라 합니다)과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하"매출채권"이라 합니다)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이하 "을"이라 하고, "갑"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한다)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터잡기로 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지급업무 대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 본 계약"은 "을"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갑"이 "을"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협력기업" 이라 함은 "을"에 "물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갑"으로부터 "본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을"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모든 매출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출채권 양도계약』(이하 "채권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갑"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 2."물품 등"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을"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재화 및 용역 등을 말한다.
- 3."매출채권" 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을"에게 "물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한다.
- 4."납품"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매출채권" 취득의 반대의 급부로 "을"에게 행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물품 등"의 공급행위(물품 인도, 용역 제공 등)를 말한다

제 3 조 (정보교환)

양 당사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 4 조 (업무처리 기본절차)

① (포괄양수도계약)

1. "갑"은 "매출채권"을 "협력기업"으로부터 양수하고 "협력기업"의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 받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협력기업"과 체결한다.
2. "갑"이 협력기업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을"과 "협력기업" 사이에 그 매출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기본 계약서 등)을 특정하여야 하고, "갑"은 매출채권 양도계약 체결 후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우편을 원칙으로 함)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을 원칙으로 함)에 의하여 "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을"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거나 그에 대한 생긴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 가. "매출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송달을 받았거나 "갑" 이외의 제 3 자로의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경우
 - 나. "가" 목 이외에 "을"이 "갑"에게 양도된 매출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갑"과 제 3 자 사이에서 "매출채권"에 관한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라. "을"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변제기 도래 시기를 불문함)
 - 마. 협력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을"에게 매출채권의성립·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 3 호의 경우 "갑"이"을"로부터 변제 받은 매출채권을 매출채권담보대출의 변제에 충당하는 사무에 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을"은"갑"이 동 매출채권의 변제금을 매출채권담보대출에 충당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매출채권 확정시의 통보)

"협력기업"이 "을"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된 경우, "을"은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매출일자, 물품 등의 명세, 매출금액, 세금계산서내역, 지급기일 등)를

"전산방법"으로 "매출채권" 만기일의 전영업일 "갑"의 영업시간까지 "갑"에게 통보한다. 명세 통보 시 "을"은 위 "협력기업"이 "을"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갑" 앞 채권양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본다. Firm Banking 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전자어음 포맷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통보서 하단에 "위 협력기업이 당사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 명세 OO 건 총 OOO 원에 대하여, 당사는 귀행으로의 채권양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산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명세 통보 시 위 승낙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낙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의사로 본다

③ (대출 취급)

"갑"은 제 1 항 제 1 호 소정의 채권양도계약(포괄양수도계약)과 제 2 항 소정의 명세 통보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 대출을 취급한다.

④ (양수금 등 지급)

1. "을"은 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갑"이 지정한 다음의 "을" 명의의 계좌로 채권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동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동 내용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원만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상호 협조한다.

예금과목	계좌번호	예금주

2. "갑"은 제 1 호에 따라 지정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별도의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시, ()시, ()시, ()시에 순차적으로 출금하여 양수금의 변제에 총당한다.

⑤ (거래내용의 확인)

"을"은 "갑"의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결과를 당일 중 확인하여야 하며, 당일 중 "을"의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을"은 동 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⑥ (매출채권의 기본계약 등의 변경 통지)

"을"과 협력기업간에 체결한 기본계약 (협력기업이 갑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기본계약)을 변경 또는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갑"은 "을"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기본계약에 의거한 채권양도계약을 협력기업과 다시 체결하여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 5 조 (명세서 등 변경통보)

- ① "을"은 제 4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권의 명세를 통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을"이 기 통보한 채권명세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산조작오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금액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갑"은 제 1 항에서 정한 변경통보를 수령한 때에는 변경된 채권명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을 행하거나, "을"에 대한 양수금 지급청구를 행하기로 한다. 다만, 그 변경통보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에 "갑"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을"은 이러한 변경통보로써 그 전에 통보한 채권명세에 기초하여 "갑"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갑"이 기 통보 받은 채권명세에 기초하여 "협력기업"에 이미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채권명세상의 지급기일 당일 14 시를 경과한 경우

제 6 조 (매출채권의 취소)

- ①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를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외담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 ③ 구매기업은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생략 하기로 합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⑤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에 관한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제 7 조 (을의 진술 및 확인)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며,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통보한 내용대로 "갑"이 담보로 취득한 양수채권("매출채권")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1. 제 4 조 제②항에 따라 통보한 "매출채권" 성립의 유효성
2. 제 1 호 소정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약정의 부존재
3. 제 4 조, 제 5 조에 따라 통보한 내용의 진실성
4. 기 통보한 "매출채권"과 제 5 조 소정의 변경통보에 의하여 변경된 채권의 동일성

제 8 조 (충당순서 및 연체이자 등)

① "을"이 제 4 조 제 4 항에 따른 지급을 행함에 있어 채권명세 통보서 상의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매출채권"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당순서는 대출취급분, 채권명세통보 순으로 하며, "협력기업"에 대출을 취급한 "매출채권" 관련 연체이자는 "갑"과 "협력기업"간에 체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출 취급한 "매출채권" 금액 중 대출 미 취급 금액 및 대출 취급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관련 연체이자는 "을"과 "협력기업"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갑"은 "협력기업" 앞 원활한 대출금회수를 위해서 상기 충당순서를 달리 적용 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처리의 예외)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다.

1. 업무처리의 대상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2. "갑"의 업무처리가 법적, 기타 등의 사유로 "갑"의 제 규정상의 제한이 있을 때
3. "을"에게 부도, 영업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 9 조 (대출 제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기업"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협력기업"이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및 부도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2. "협력기업"이 본 계약에 따른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
3. "협력기업"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전산상 장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5. "협력기업"과 체결한 매출채권양도계약서의 해지 등 실효되는 경우

② "갑"은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협력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력기업의 회사정리절차 신청 시 처리 등)

① "협력기업"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등 "갑"과의 약정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당해 협력기업에 관한 "을"의 "갑"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협력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기로 하여, 양 당사자는 위 사실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 11 조 (전산시스템상의 문제)

- ①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펌뱅킹, 인터넷뱅킹, 또는 기타 전산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채권의 명세 및 기타 변경사항을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을"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변조됨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 일방이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고 "을"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② 양 당사자가 혹은 어느 당사자 일방이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손해를 "협력기업"이나 기타 제 3 자로부터 전보 받을 수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협력기업"이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③ "갑" 또는 "을"의 전산시스템과 외부의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과 "협력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④ 당사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매출채권의 발행한도 및 기타 사항)

- ① "을"의 매출채권 발행한도는 발행시점의 만기 미결제 매출채권잔액의 합계액(미결제 매출채권잔액의 합계액은 "을"이 발행을 요청한 당해 매출채권금액도 포함하여 계산) 기준 _____ 원으로 한다. "을"은 이 한도를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③ "을"이 제 5 조 제②항 각 호에서 정한 시기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 등"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갑""을"이"협력기업"으로부터 당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거나 상계를 할 수 있도록 "갑"의 내규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 ④ "갑"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을"의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동 거래 업체의 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을"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대행 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한다. 다만, 그 업무의 범위는 "을"이 "을"의 거래업체 앞 구매한 "물품 등"의 대금을 "을"이 지정한 지급기일에 제 4 조에서 정한 "을"의 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하여 "을"의 거래업체가 "갑"에게 신고한 "을"의 거래업체 계좌로의 입금을 대행하는 업무로 제한하며, 동 업무 수행 시 본 계약의 제 4 조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제 5 조, 제 8 조, 제 11 조 및 제 13 조 이후 조항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13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준용사항)

업무처리와 관련한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갑"의 수신거래 기본약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심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서 효력)

- ① "본 계약"은 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느 당사자가 만료 60 일 전에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 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③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을"에게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납품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한다
 1. 회사채 또는 "갑"에 대한 "을"의 신용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2. 회사채 또는 "갑"의 "을"에 대한 신용등급이 각각 BBB-, ORR5-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3. 당행 또는 타행의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지급이 연체된 경우
 4.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5. "갑"에게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⑤ "본 계약"이 해지,종료하는 경우에도 해지,종료 이전에 제 4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명세를 통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17 조 (기타 특약사항)

(을) : (인)

Empty rectangular box for additional terms.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본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 (인)

제 18 조 (계약증명)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을)

(갑)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지점

(주소)

(주소)

대표이사

(인)

지점장

(인)